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6
----------	-----

2016. 12. 1.(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강현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6년 11월 22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2월 1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강현삼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안 제1조)
-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조문 삭제(안 제4조제3항)
- 평가지원반 구성·운영 사항 변경(안 제5조)
- 운영세칙 신설(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경형)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13442호(2016.1.25.)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 실시 요청을 받은 시·군 지역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강제 규정이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며,
- 평가지원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률상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례 제 526호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원받아 시·도”를 “지원받아 충청북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평가 실시 요청 등)”을 “(평가 실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피해지역의 평가단과 인근 시·군 평가단의 지원으로 평가가 어려운”을 “피해 시·군의 평가단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진피해”를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지진피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군 지진재해 수습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지원 요청을 받은 시·군 지역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평가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장"이라 한다)이 임시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지원반을 말한다.

제4조(평가 실시 요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시·군 지역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지
진 피해지역의 평가단과 인근 시
·군 평가단의 지원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지원반을 구성·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평가지원반의 반원은 지진피해
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평가
단,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
축·토목 등 관련 협회나 단체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성별을 고려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
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④ 평가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충청북도 내 시·군 및 인근

-----.

제4조(평가 실시 요청) ①·② (현
행과 같음)

<삭제>

제5조(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등) ① -----
피해 시·군의 평가단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지진피해-

-----.

④ -----
-----.

1. (현행과 같음)

2.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의 평가 지원 요청

3. 지진피해 시·군 및 시설물에 대한 평가 지원

4. 그 밖에 충청북도 내 시·군 평가단 지원에 관한 업무

제7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시·군 지역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요청을 받은 시·군 지역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군 지진재해 수습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평가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관 계 법 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 7. <생략>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6., 2015.7.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가. 지진·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시행

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라. 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2. 내진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 지도"라 한다)의 제작·활용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3.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분석·통보·경보전파 및 대응

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시설·장비의 설치와 관리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통보

다. 지진·화산재해 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라.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대처요령 작성·활용

마.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바. 지진·화산재해의 원인 조사·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4.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요령을 정하여 주민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